#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0. 14)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제안이유

○ 자연학습장(부천식물원) 부설주차장 이용 고객의 입출차 시 주차요금 산정함에 있어 현행 시간 정산제를 정액 요금제로 변경함으로 요금 정산 시간 절약 및 주차요금 징수 인건비를 줄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 도심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문제가 대두되어 야간 시간대에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 1)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고 쉽게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학습장(부천식물원) 부설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 함.(안 제6조제1항)

·시간 정산제 → 정액 요금제(별표 4)

나.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대상 확대 및 제공비율을 확대 함.(안 제14조)

·제공대상: 마을버스 항목 추가

·제공범위: 100분의 30 → 100분의 40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문 | 답 변 |
|---|---|
|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이용율은 어떠한지?<br>・마을버스는 차고지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은지?<br>・자연학습장 주차장을 정액제로 변경하면 1명으로 근무가 가능한지와 앞으로 1일 몇시간 정도 근무할 계획인지?<br>・동절기, 하절기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하절기에는 연장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공영주차장은 51개소에 약6,400면이며, 주차에는 여유분이 많음.<br>・일반시내버스는 공용주차장을 시설하여 제공하는데 마을버스에는 혜택이 없음.<br>・1일 8시간 근무할 계획이며, 요금제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겠음.<br>・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주차제한차량등”을 “주차제한차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이외의”를 “규정 이외의”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당해토지”를 “해당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제1항제1호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 수의계약 | 제4항에 따른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6조제1항 중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을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및 부천시자연학습장 주차장 요금”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8조의2의 규정에”를 “제8조의2에”로 하며, “당해 주차요금외에 당해”를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폐지등”을 “폐지 등”으로 하며, “돌릴수”를 “돌릴 수”로 하고,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판매등”을 “판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차량이외에”를 “차량 이외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화물자동차외”를 “화물자동차 외”로 하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화물자동차외”를 “화물자동차 외”로 한다.

제11조제목 중 “표시등”을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미터미만”을 “6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심의등”을 “심의 등”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 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40 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6조 중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하고, “100분의 5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300미터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6월”을 “6개월”로 하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6항 단서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등”을 “차량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2퍼센트이상”을 “2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목 중 “면제등”을 “면제 등”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 당해”를 “그 밖에 해당”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중 “20년이내”를 “20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의2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아니 하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1천제곱미터이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목 중 “방법등”을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법 제1항 중 “규정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00제곱미터이상”을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0제곱미터 미만”

을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받을수”을 “받을 수”로 하며, “제12조제1항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2배이상”을 “2배 이상”으로 하며,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자율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30조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않을 때에는”을 “아니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부천시자연학습장 주차장 요금표**(제6조 관련)

| 구 분 | 차 종 | 요 금 |
|---|---|---|
| 1회 요금 |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 1천원 |
|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3천원 |
| |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5천원 |

※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은 공영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제493호 |
| 의 결 년월일 | 2009. 11. 23. (제157회) |

제출년월일 : 2009. 10.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자연학습장(부천식물원) 부설주차장 이용 고객의 입출차 시 주차요금 산정함에 있어 현행 시간 정산제를 정액 요금제로 변경함으로 요금 정산 시간 절약 및 주차요금 징수 인건비를 줄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 도심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문제가 대두되어 야간 시간대에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 1)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고 쉽게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자연학습장(부천식물원) 부설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 함. (안 제6조제1항)

·시간 정산제 → 정액 요금제(별표 4)

나.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대상 확대 및 제공비율을 확대 함.(안 제14조)

·제공대상: 마을버스 항목 추가

·제공범위: 100분의 30 → 100분의 40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주차제한차량등”을 “주차제한차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이외의”를 “규정 이외의”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당해토지”를 “해당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제1항제1호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 수의계약 | 제4항에 따른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6조제1항 중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을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및 부천시자연학습장 주차장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8조의2의 규정에”를 “제8조의2에”로 하며, “당해 주차요금외에 당해”를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폐지등”을 “폐지 등”으로 하며, “돌릴수”를 “돌릴 수”로 하고,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판매등”을 “판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제2호에 따

른”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차량이외에”를 “차량 이외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화물자동차외”를 “화물자동차 외”로 하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화물자동차외”를 “화물자동차 외”로 한다.

제11조제목 중 “표시등”을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미터미만”을 “6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심의등”을 “심의 등”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 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40 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6조 중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하고, “100분의 5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300미터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

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6월”을 “6개월”로 하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6항 단서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등”을 “차량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2퍼센트이상”을 “2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목 중 “면제등”을 “면제 등”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 당해”를

“그 밖에 해당”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50퍼센트 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중 “20년이내”를 “20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의2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아니 하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1천제곱미터이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목 중 “방법등”을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법 제1항 중 “규정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00제곱미터이상”을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0제곱미터 미만”을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받을수”을 “받을 수”로 하며, “제12조제1항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2배이상”을 “2배 이상”으로 하며,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자율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30조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않을 때에는”을 “아니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부천시자연학습장 주차장 요금표**(제6조 관련)

| 구 분 | 차 종 | 요 금 |
|---|---|---|
| 1회 요금 |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 1천원 |
|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3천원 |
| |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5천원 |

※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은 공영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 (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내표지를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br>1.~3. (생 략)<br>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br>②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br>1.~3. (생 략) |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각 호 ----------.<br>1.~3. (현행과 같음)<br>4.그밖에 ---------- ----------주차제한차량 등<br>②----------제18조제2항에 따라 ----------각 호.<br>1.~3. (현행과 같음) |
|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등은 다음과 같다.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제13조제2항에 따라 ----------.<br>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구분 | 선정 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 방법 |
|---|---|---|---|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 수의 계약 | 제4항에 의한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기타의 경우 | 경쟁 계약 | 입찰가격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구분 | 선정 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 방법 |
|---|---|---|---|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 수의 계약 | 제4항에 따른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그 밖의 경우 | 경쟁 계약 | 입찰가격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 |
|---|---|
|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 ③ ----------규정 이외의 ----------따른다. |
| ④ 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해토지의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해당 토 지 ----------. |
|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및 부천시 자연학습장 주차장 요금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 |
|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외에 당해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8조의2 에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 ----------. |
| 제7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따라 ---------- 제5조에 따 라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폐지 등 ----------돌릴 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④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 |
| 제8조 (주차카드의 판매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따라.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에 구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 |
| 제9조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이외에 ----------. |
| 제10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며,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제7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외 ----------제2조제20호에 따른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 화물자동차 외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 ② (생 략)<br>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br>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br>----------<br>---------- 해당<br>----------<br>----------<br>----------.<br>④ ---------- 6미터 미만<br>----------<br>----------<br>----------<br>----------<br>----------. |
| 제13조 (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br>1. (생 략)<br>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br>3. (생 략) |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 제12조제1항에 따라<br>----------<br>----------<br>각 호 ----------.<br>1. (현행과 같음)<br>2. 해당----------<br>3. (현행과 같음) |
|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영노외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주차장 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의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br>② 제1항에 의하여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안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br>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 의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발급사항을 익월 5일까지 기타 계약해제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 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40 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와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br>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br>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br>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br>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 제1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br>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br>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 제1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100분의 5 이 상 ----------. |
|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6조에 따른----------.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300미터 이내-----. |
| 제18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br>1. (생 략)<br>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br>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br>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19조제6항에 따 라 ----------.<br>1. (현행과 같음)<br>2----------해당 ----------<br>3.----------제9조제2항에 따른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br>--6개월----------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수 있다. | ----------. |
|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 4. ------해당----------해당----------제86조에 따라---------- |
|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범위에서----------. |
|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3.---------- ---------- 제9조제2항에 따른----------따라----------제21조제1항에 따라----------6개월----------.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④ ----------해당----------. |
| 제19조 (공공기관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소속 기관의 청사와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 및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범위에서----------. |
|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②----------차량 등 . |
| 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등)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제4조에 따라----------2퍼센트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br>1.~3. (생 략)<br>③ (생 략)<br>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br>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br>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br>제21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하역외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제17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 이상----------.<br>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 ----------.<br>1.~3.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br>④ ----------<br>-----각 호 ----------.<br>1.---------- 따 른 ----------.<br>2.---------- ----------제1호에 따른 ----------.<br>제21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제8조제3항에 따라 ---------- 그 밖에 해 당 ---------- 따라 ----------50퍼센트 이상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2조 (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제6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차(주·야간)요금을 적용하여 나누어 산정된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 제22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20년 이내---. |
| 제22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의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따 라----------해 당----------아니하다. |
| 제24조 (보조의 대상) (생 략)<br>1. · 2. (생 략)<br>3.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제24조(보조의 대상) (현행과 같음)<br>1. · 2. (현행과 같음)<br>3.---------- 1천제곱미터 이상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5조 (보조금 교부 방법등) ① 보조금 교부방법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다.<br>② 자가주차장 설치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br>③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br>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 1을 보조하며 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3분의 1<br>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을 보조하며 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5분의 1 | 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br>----------에 따른다..<br>②<br>----------<br>범 위 에 서<br>----------.<br>③ ----------<br>---------- 범위에서<br>----------.<br>1 .<br>----------<br>2천제곱미터 이상<br>----------<br>--------<br>2.----------<br>-- ---------- 2천제곱미터<br>이 하<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7조 (융자의 대상)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자를 말한다.<br>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27조(융자의 대상) ① 제23조의에 따라 ------ 받을 수 ----------<br>----------제12조제1항에 따른<br>----------<br>----------<br>----------<br>---------- -2배 이상<br>----------하는자----------.<br>② ----------하는 자<br>----------<br>----------. |
| 제28조 (융자의 방법) ① (생 략)<br>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br>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융자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br>② ----------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br>③----------<br>---------- ------- 그 밖에 ----------. |
| 제29조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br>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br>2. 상환 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 제29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br>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br>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
| 제30조 (강제징수)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30조(강제징수) -------- 제29조에 따라 ----------아니할 때에는 ----------. |
| 제31조 (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1조(과징금 처분)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 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 ---------- 따른 ----------. |
|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 10일 이내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 |
|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 |